

1. 개정이유

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에 따라 봉인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건설기계등록번호표 봉인방법 개선(안 별표3)

- 1) 봉인방법의 규격을 변경된 등록번호표 규격에 맞게 개선
- 2) 봉인방법의 구성부품, 조립방법 등 봉인의 구조는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11.15. ~ 11.18.)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결과 규제 없음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방법 (제13조제3항관련)

1. 봉인장치는 봉인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.
2. 봉인장치의 규격
 - 가. 봉인의 지름(봉인의 표시가 새겨진 봉인두의 지름) : 10mm~12mm
 - 나. 봉인의 높이(등록번호표 표면에서 봉인두 끝단까지의 길이) : 6mm~8mm
3. 봉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재(한국산업표준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235 또는 SS275)로 하여야 한다.
4. 봉인의 표시 및 규격

